

▶ 계약양도(Assignment)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의 전부, 일부 또는 계약상 제반 이익(benefit or interest)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시공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대금 수령권을 담보로 요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 시공자문서에 대한 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계약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시공자 문서 (도면, 계산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등)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시공자가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발주자는 자신이 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므로 시공자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시공자 문서를 제작한 시공자가 보유하고, 발주자에게는 공사의 완공,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변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non-exclusive license to copy or use)가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공자가 설계부분을 하도급 줄 경우가 있다. 이 때, 하도급 계약서 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이 하도급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 도급계약상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는 하도급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발주자 에게 이전시킬 수 없으므로 원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발주자 요구사항상의 오류 (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발주자 요구사항상의 오류가 적절한 주의의무를 행사한 경험 있는 시공자가 발견할 수 없었던 성질의 것일 경우,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발생된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은 보상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의의무를 행사한 경험 있는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힘든 발주자 요구사항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에 따라서는 시공자에게 발주자 요구사항의 모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요구하고, 추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현장인도 (Right of Access to the Site)

발주자의 현장인도 지연으로 인해 시공자에게 추가 비용 및 공기지연 발생 시, 시공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발주자는 시공자가 당초 공정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에게 현장물의 적절하게 인도해야 한다.

현장인도일은 공사착수일(Commencement Date)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규정한다.

▶ 발주자의 금융조달(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

발주자는 공사 수행을 위한 금융조달이 완료되었음을 시공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발주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시공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28일 이내에 금융조달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융조달에 중대한 변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로 민간발주공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감리자(Engineer)

감리자가 계약상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단, 이러한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권한을 감리자가 행사한 경우,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는

발주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리자가 계약상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시 감리자가 이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시공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발주자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권한을 감리자가 행사한 경우, 감리자는 발주자와 맺은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감리자가 계약상 명시된 권한 행사 시, 감리자는 발주자를 위해 행동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시공자는 감리자의 행위에 대해 발주자에 대해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감리자의 지위를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평한 중재자(impartial intermediary)로 규정할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의 행위에 대해 발주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비록 발주자에게 고용되어 대가를 지급 받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행위 하는 자가 아니고, 양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행위 하는 중재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꼭 안전띠를 매야 하는 이유

비행기를 타는 승객 중 비행 '요란(Turbulence)'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란'이란 대기 중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발생한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는 대기압, 제트기류, 산악 파, 온난·한랭전선 및 뇌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의 고도를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갑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이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면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안전띠도 매지 않은 채 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중의 '요란'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착용 신호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착용신호에 상관없이 항상 안전띠를 매고 있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